

「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」 개정 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<u>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포함)</u> 제1조 거래조건 (생략) <table><tr><td>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</td><td>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</td><td>(생략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(추가)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생략)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생략)</td></tr></table> (생략) 제2조~17조 (생략)	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	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	(생략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(추가)</u>			(생략)			(생략)			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<u>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포함)</u> 제1조 거래조건 (현행과 같음) <table><tr><td>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</td><td>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</td><td>(현행과 같음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/table> (현행과 같음) 제2조~17조 (현행과 같음)	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	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	(현행과 같음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	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문구 명확화
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	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	(생략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소득	하한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3억원 초과	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(추가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자율 (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선택)	☐ 신생아 특례대출 (고정금리)	(현행과 같음) *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<table><tr><th>연소득</th><th>하한금리</th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소득	하한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3억원 이하	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3억원 초과	<u>대출접수일 기준 가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,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<u>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「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」 개정 대비표

현행				개정				비고										
제1조 거래조건 (생략)				제1조 거래조건 (현행과 같음)				문구 명확화										
대출 이자율	변동 금리	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	(생략) ※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-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: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금리 연 ()%에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() % 부과 <u>(추가)</u> - 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 단,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*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. 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	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	(현행과 같음) ※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-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: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금리 연 ()%에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() % 부과 <u>*연소득 7.5천만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됩니다.</u> - 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 단,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*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. 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													
			<table><tr><td>연소득</td><td>하한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<table><tr><td>연소득</td><td>하한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이하</td><td>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</td></tr><tr><td>1.3억원 초과</td><td><u>대출접수일 기준 0.2%p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</table>	연소득	하한금리	1.3억원 이하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1.3억원 초과	<u>대출접수일 기준 0.2%p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
			연소득		하한금리													
			1.3억원 이하	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												
			1.3억원 초과		<u>(추가)기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
연소득	하한금리																	
1.3억원 이하	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																	
1.3억원 초과	<u>대출접수일 기준 0.2%p</u>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										
※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 시 [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]		※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 시 [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]																
고정 금리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(생략)		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((현행과 같음))																
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<u>(추가)</u> (생략)		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<u>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(생략)		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
현행	개정	비고
제2조~5조 (생략)	제2조~5조 (현행과 같음)	
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	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	
①(생략) 1.~9. (생략) <u>(추가)</u>	①(현행과 같음) 1.~9. (현행과 같음) <u>10. 제출한 자료가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</u>	조항 추가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	
제7조~9조 (생략)	제7조~9조 (현행과 같음)	
제10조 기한연장 <u>(추가)</u>	제10조 기한연장 <u>및 목적물 변경</u>	
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	
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 <u>(추가)</u>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	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 <u>(단,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(대출 담보 보증서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) 이하인 경우 0.1%)</u>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	전세자금 10% 미상환 가산금리 부과방식 변경
③~⑧(생략) <u>(추가)</u>	③~⑧(현행과 같음) <u>⑨ 대출목적물 변경 즉시 은행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합니다. 또한,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요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</u>	
제11조~13조 (생략)	제11조~13조 (현행과 같음)	
- 고객 고지 사항 -	- 고객 고지 사항 -	
1. 제12조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 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합니다.	1. 제12조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 의사 표시는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합니다.	
2. <u>(추가)</u>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제13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(추가)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(추가),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보증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	2. <u>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</u>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제13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처리되며,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보증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	
3. 주택도시보증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	3. 주택도시보증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	
-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	- 본인은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	
본인 (인) 자필확인	본인 (인) 자필확인	